

2025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

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포상내용

- 포상부문: 3개 부문
 - 보존·관리: 국가유산 보존·관리, 세계유산 등재·관리 분야
 - 학술·연구: 국가유산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·연구 분야
 - 봉사·활용: 국가유산에 대한 봉사·활용·홍보·교육 분야
 - 포상규모
 - 훈장: ○점
 - 대통령표창: ○점(부상, 각 1천만원)
 - 국무총리표창: ○점(부상, 각 5백만원)
- *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

2 포상후보자 자격

- 훈장
 -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·연구·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
-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 -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국가유산 보존·연구·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

3 시상식 일시 및 장소(예정)

- 일 시: 2025년 12월 9일(화), 14:00(「국가유산의 날」에 실시)
- 장 소: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

4 제출서류

- 추천대상: 개인, 법인, 기관, 단체 등 제한 없음
- 제출서류
 - 추천서 1부(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추가 첨부)
 -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 -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
 - ※ 제출서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·이메일 송부, 출력물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병행 필수(★ 전자우편 candyboy@korea.kr)
 - ※ 동일인을 훈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 중복 추천 불가(하나만 선택가능)
 - ※ 피추천인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 불필요.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

5 제출방법

- 서식배부: 국가유산청 누리집 게재(www.khs.go.kr-새소식-공지사항)
- 접수 처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(우 35208)
- 접수기간: 2025. 6.13.(금)~ 7. 28.(월)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접수 마감일 18:00 까지 도착분에 한함)

6 심사기준

- 부문별(훈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로 수상후보자의 수공기간, 공적의 정도, 기여도,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심사하여 선정함
 - * 구체적인 서훈 등급은 기 서훈 여부, 수공기간, 공적의 정도,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
-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긴 후보자를 우선함
-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시에는 단체를 우선함
- 과거 수상자 분야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
 - * 세부적인 사항은 “정부포상업무지침(2025.1.1.시행, 행정안전부)”을 준용

7 수상자 발표

- 수상자 발표 : 2025년 12월 초(개별 통지)
 - ※ 심사결과 미선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음

8 기타사항

□ 재포상 금지

-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 (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)
- 이미 받은 훈장(또는 포장)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(또는 포장)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(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)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(정부포상업무지침)
 - * 공무원(교원) 등 퇴직시 퇴직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포상 금지기간 동일 적용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(정부포상업무지침)

□ 포상 추천 제한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

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*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·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 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* 공무원 추천 시 제한기준은 “정부포상 업무지침(2025.1.1.시행, 행정안전부)” 준용
-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: 2025. 10. 31.(목)
 - 수공기간, 재포상 금지기간,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산정시 기준일
- * 단, 추후 최종 후보자 추천시 정부 추천일 기준 재산정되므로, 본 기준일자로 산정된 수공기간 등과 상이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자격 미달,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(042-481-4766~4767)로 문의하시기 바람

2025년 6월 13일

국 가 유 산 청 장

[서식 1]

추 천 서 (개 인)

추 천 인 (또는 추천기관)	성 명 (또는 기관명)		피추천인 과의 관계	(피추천인의) 000
	주 소		e-mail	
	전 화		휴대전화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성 명	(한글) (한자) * 외 국인 은 영문 성명	생년월일	
사 진 (3.5cm×4.5cm)	소 속		직 위	
	휴대전화		전 화	(자 택) (사무실)
	주 소	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	e-mail	
	추천훈격	훈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	공적기간	0년 0월로 기재 작성일 기준 예) 20년 7월
	추천분야	보존관리, 학술연구, 봉사활동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		
주요 학력 및 경력	시작연월일~ 종료연월일	이력사항		
	2010.01.01~ 2010.12.01	경력의 경우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		
	⋮	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		
	⋮			
	2019.01.01~ 현재			
과거 포상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 로 기록)	수여일자 (연 월 일)	포상종류		
	2012.12.08	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		
		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		
공적요지 (70자 이내)	<p>공적요지는 향후 「수여증명서」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서, 주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70자 이내</p> <p style="color: red;">*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'000에 기여함' 으로 작성할 것</p>			

공 적 내 용 (최소 2,500자 이상)

- 피추천인의 공적은 '공적내용'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
 -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등 필요시 제출
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,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

* 반드시 2,500자 이상 작성 필요 (2,500자 미만일 경우 보완 요청 예정)

* 제출 시 한글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 병행(candyboy@korea.kr)

백상지(120g/m²) 또는 백상지(80g/m²)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- 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주택·사무실)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
-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성명,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
[서식 2]

추 천 서 (단 체)

추 천 인 (추천기관)	성 명 (기관명)		피추천인 과의 관계	(피추천인의)
	주 소		e-mail	
	전 화		휴대전화	
피추천인 (포상대상)	단체명		대표자 성명	
사 진 (단체 로고 또는 상징)	법인번호		사업자 등록번호	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	휴대전화		전 화	(사무실)
	주 소	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	e-mail	
	추천훈격	훈장, 대통령표창,, 국무총리표창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	공적기간	0년 0월로 기재 작성일 기준 예)20년 7월
	추천분야	보존관리, 학술연구, 봉사활동 중에서 1개를 반드시 기재		
주요 경력	시작연월일~ 종료연월일	이력사항		
	2010.01.01~ 2010.12.01	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		
	· ·	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		
	· ·			
	2019.01.01 ~ 현재			
과거 포상기록	수여일자 (연 월 일)	포상종류		
	2012.12.08	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		
		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		
공적요지 (70자 이내)	<p>공적요지는 향후 「정부포상 수여증명서」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</p> <p style="color: red;">*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'000에 기여함으로 작성할 것</p>			

공 적 내 용 (최소 2,500자 이상)

-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'공적내용'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
 - 피추천단체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 등 필요시 제출
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,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
- * 반드시 2,500자 이상 작성 필요 (2,500자 미만일 경우 보완 요청 예정)
- * 제출 시 한글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 병행(candyboy@korea.kr)

백상지(120g/m²) 또는 백상지(80g/m²)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- ① 피추천단체(포상후보자)의 단체명, 주소, 전화번호(사무실)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
- ② 추천인 성명(단체명)과 피추천단체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단체명,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단체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
[서식 3]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(정부포상 후보자용)

□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“신고의무 사항”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제1호의 “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- 신고의무 사항
 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 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 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 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 - ※ 「상훈법」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
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5 . . .

성명

(서명)

[서식 4]

「2025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」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

후 보 자	성 명	소속(주소)	직위(직급)	추천예정 훈격
공 적 내 용	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			
확 인 결 과	<p>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(현장실사, 증빙자료 제출·접수, 증언 청취 등) 및 확인결과 기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요 공적 내용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2. 현지 여론(공사생활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, 통·반장,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○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3.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○ 품성(도덕성 훈격여부 등)에 대한 부적격 여부 4.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			
<p>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,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. . .</p> <p>작성자 기관(또는 부서) 포상담당 (직급) (성명) (서명)</p> <p>확인자 담당 과장(팀장) (직급) (성명) (서명)</p>				